

대법원 2017다257746 집행판결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 12. 23.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 외국법원의 소송서류를 한국에 있는 피고의 거소에서 그 남편에게 보충송달하고 그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그 보충송달은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방식에 포함됨
- 이와 달리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원고(뉴질랜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법인)는 2013년경 피고 등을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이하 '뉴질랜드 법원')에 대출채무 등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뉴질랜드 법원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하였음. 대한민국 법원은 피고의 거소에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충송달하였음

- ▣ 그 후 뉴질랜드 법원은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뉴질랜드 법원의 판결(이하 '외국법원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나. 소송 경과 상고심 당사자인 피고 부분에 관하여만 기재

- ▣ 1심(서울중앙지법) : 원고 승(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 ▣ 원심(서울고법) : 항소 기각
 - 피고에 대해 이루어진 **보충송달**도 외국법원의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그 밖에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외국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함
- ▣ 피고 상고

2. 쟁점의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한 요건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판결에 기해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함**
-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을 것
 -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
-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
 - 우리나라는 촉탁국의 기관이 수탁국의 기관에 송달을 요청하여 수탁국의 송달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송달을 실시하는 간접송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국내법상 송달 방식으로 민사소송법은 (1)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면

서, (2) 교부송달의 변형으로 ① 조우송달, ② 보충송달, ③ 유치송달 방식을 인정하고 있고 (3)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①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② 송달함 송달, ③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④ 공시송달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충송달'은, 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하게 되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들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을 말함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제183조 제2항)

나. 선례

- ▣ 종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815 판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참조).

3. 대법원의 판단 : 전원일치 의견

- 가. 법리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송달도 교부송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 뉴질랜드 법원의 촉탁에 따른 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이루어 지는데, 위 법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 방식 중의 하나임**
- **보충송달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수령 대행인을 통해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식과는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음**
- 보충송달을 공시송달과 유사한 송달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송달 방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문리해석에도 부합하지 않음
- 보충송달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위한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함.
- 외국법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에 따라 보충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후 외국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적법절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도 있음

나. 판례의 변경 : 위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함

-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81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

지의 판결들을 모두 변경함

다. 이 사건의 결론 : 상고기각

- 원심은, 피고가 사는 곳에서 피고의 남편에게 외국법원의 소송서류를 보충송달한 것을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방식으로 보았고, 그 밖의 승인·집행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외국판결의 강제집행을 허가함
-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